

의안
번호

426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1. 24.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426호

다. 제출일자 : 2020. 11. 17.

라. 회부일자 : 2020. 11. 17.

2. 제안이유

- 성북구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정책을 수립·보급하며 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문적·효율적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과 마을의 주민수요와 과제 중심으로 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자원의 발굴

- 성북구 문화자원 발굴과 문화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가치 향상을 추구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도모
- 성북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현황과 수요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성북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 추구

나.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성북 문화예술 공동체 만들기

- 차별화된 성북 대표 지역문화 축제, 공연, 전시 진행
-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동네별 우리 예술마을 만들기 추진
-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화 및 예술인, 단체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확대

다. 문화시설 운영관리(도서관, 아리랑시네센터, 미술관 등)

- 구민의 문화 예술적 소양 함양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문화 행사·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구민의 문화 예술적 소양 함양 및 문화 격차 해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편성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성북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 추진비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사결정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임.

출자·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의결 의무화 규정

- 2014. 5.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은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6회계연도부터 출자·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취지임.

□ 출연근거

-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2)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바,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출연규모

- 2022년도 성북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9,388만원이 증가하고,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94%인 3억 1,530만원이 감액된 158억 7,156만원 규모임.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년도대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증감	증·감 사유
	본예산	최종예산			
출연금	14,977,678	16,187,095	15,871,565	본예산 대비: 893,887	신규인력 및 자연상승 인건비, 신규사업비 증가 등
				최종예산 대비: :감329,134	자본적지출 (시설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감액

□ 종합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1)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은 관련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금액 확정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바, 출연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임.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